

개정 「총사업비 관리지침」 시행

- 지난달 발표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25.10.31.) 후속조치
- 공공공사에 건설분야 신기술 적용 확대,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25.11.28일, 개정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시행하였다.

담당 부서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재우 (044-215-7210)
		담당자	사무관	안성희 (shahn3@korea.kr)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및 범위) ① ~ ⑤ (생략)</p> <p>⑥ 사업 유형별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정보화사업: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구축비, 보상비, 부대경비 등 구축 기간에 소요되는 <u>총비용과 구축 후 5년간 운영·유지관리비, 추가구축비 등으로 구성</u></p> <p>3. (생략)</p>	<p>제2조(정의 및 범위)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u>총비용</u></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 사업 및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p> <p>1. ~ 4. (생략)</p> <p>5. 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시설에 대해 지자체 등이 수요의 창출, 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자체재원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u>사업</u></p>	<p>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 <u>사업</u></p>

제32조(기본·실시설계) ① (생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0조의 규정의 의한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당초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대안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하 ‘대안입찰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3조(공사 발주 이후) ① 중앙관

서의 장은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7장 중앙관서

제32조(기본·실시설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제98조제2호 내지 제3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하 ‘대안입찰사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3조(공사 발주 이후) ① -----

----- 대안입찰사업 등의 -----

4. ~ 7. (생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9조제2항 각 호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0조(타당성재조사 용역) ①·②

(생략)

③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 이내(철도부문 1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정할 수 있다.

4. ~ 7.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사업비가 표준사업비 미만인 사업으로서 현저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
각 호 및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 단서-----

-----.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타당성재조사 용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철도부문 6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조사수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④ ~ ⑦ (생략)

제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건축사업의 경우 계획설계·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략)

<신 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 9개월(철도부문 12개월) 이내-----

----- . ----- 용역수행자는 조사수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2. (현행과 같음)

3.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제49조 제1항에 따른 타당성재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의2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시행하는 경우

④ -----

제3항 본문에 따라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제2
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제65조(보상비의 구분) 보상비는 직
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로 구분한
다.

1. (생략)

2. 간접보상비 : 분할측량 비용 ·
감정평가 비용(제18조제2항 내
지 제5항에 따라 표본기준가격
조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포
함) · 권리이전 비용 · 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공사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
태계보전부담금 등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보상
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제69조(설계비의 조정기준) ① ~
⑤ (생략)

등 검토 및 제23조 제6호의 적정
공사기간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65조(보상비의 구분) -----

-.

1. (현행과 같음)

2. -----

----- 위탁
수수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
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상전
문기관이 주무부처 대행사업의
보상업무를 직접수행하는 경우
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별
표1의 위탁수수료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
비) ----

제69조(설계비의 조정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⑨ (생략)

제94조(과업범위의 제한) ① 정보화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의 조정은 ISMP에서 수립된 구축비, 보상비, 부대경비, 시스템 구축 후 5년 간 운영·유지관리비, 추가 구축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95조(정보화 사업의 조정기준) ① ~ ③ (생략)

④ 추가구축비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기능의 변경·추가·보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증설 등 시스템의 개선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⑤ ~ ⑦ (생략)

제99조(자율조정 대상사업)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은 자율조정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의 경우에도 제10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사유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⑨ (현행과 같음)

제94조(과업범위의 제한) ① -----

부대경비-----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5조(정보화 사업의 조정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④ ~ ⑥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99조(자율조정 대상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
----- 대안입찰사업 등-----

----- 대안입찰사업 등-----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조정한다.

제103조(자율조정 항목) ① 공사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낙찰자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공사비에 계상함에 따른 공사비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6. 공사무량 변동과 관련된 설계 변경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별표 2 붙임 3>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에 의함
- 가. ~ 다. (생략)

<신 설>

- 7.·8. (생략)
 - ② (생략)
 - ③ 시설부대경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1.·2. (생략)
 3.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낙찰자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공사비에 계상함에 따른 설계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

제103조(자율조정 항목)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일괄입찰사업 및 대안입찰사업 등의 경우, 총 규모의 변경이 없는 공종간 사업비 조정과 -----

 6.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시공 및 시설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설계변경

- 7.·8.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 1.·2. (현행과 같음)
 3. 일괄입찰사업 및 대안입찰사업 등-----

4. ~ 6. (생략)

제115조(재검토기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 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 6. (현행과 같음)

제115조(재검토기한) -----

----- 2025년 11월 28일 -----

--- 11월 27일-----

-----.